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(안) 심사보고

1. 심사 경과

가 2006. 6.15: 사천시장 제출

나 2006. 6.15 : 총무위원회 회부(의안번호 제 33 호)

다 2006. 6. 27 : 제10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(회계과장 류재석)

가 제안이유

■ 2006년도에 취득할 중요 공유재산을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 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 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함.

나 주요내용

■ 취 득 (변경분)

취득사유	구분	수량	면적 (m²)	예정가액 (천원)	담당부서	비고
화당산 체육시설 부지 매입	토지	1	3,794/ 33,618	3,794	문화관광과	
서부상가 주차장 확장사업 부지 매입	토지	10	1,007	359,732	-지역경제과	
	건물	8동	534.08	59,026		

※ 예정가격은 개별공시지가 기준임

다 관계법령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송군호)

- 2006년도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화당산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사천시 축동면 탑리 산149-6번지 33,168㎡ 중 산 정상에 위치한 3,794㎡를 예정가격 3,794천원에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써
- 주요시설 계획으로는 족구장 1면, 평행봉 외 체육시설 6종, 팔각정 및 편의시설 20개, 샤워 및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하고 활력 있는 정서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, 축동면의 당산으로서의 역할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봄.
- 서부상가 주차장 설치를 위해 사천시 서동 280번지 외 9필지 1007㎡ 및 건물8동을 예정가격 418,758천원에 취득코자 하는 것은
- 서부상가는 사천시의 관광 활성화 시책과 유람선 관광협회의 적극적 인 홍보활동으로 침체되고 있는 타지역의 재래시장과는 달리 경기가 활 성화 되고 있으나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해 서부상가 활성화에 장애요 인이 되고 있어 기존 서부상가 주변 주차장의 주변 토지 및 노후건물을 매입하여 정비 확장하려는 것으로
- 「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근거하여 국·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함으로서 서부시장 주변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
- 사업추진 방법에 있어 「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」 제43조 제1항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시행함으로서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 하여 협의취득이 불가할 경우 수용에 의한 취득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 적용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: 없음